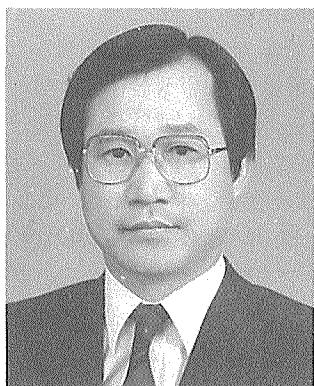


우리나라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정책



한 준 호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장)

1. 지원배경

- 국내소요 석유의 전량을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70년대 두차례의 석유파동이후 석유의 안정적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외 석유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석유개발사업은 사업성공시에는 대단히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사업이지만, 성공률이 세계 평균 2~5퍼센트로서 낮은 반면에 탐사사업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회임 기간이 6~10년으로 장기이며,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 석유탐사·개발부문의 기술축적이 거의 없고 자기자본 조달능력이 매우 취약한 국내기업이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정책적인 투자유인과 금융지원 없이는 석유개발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당시 일본, 서독등 선진국에서 석유의 탐사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성공불용자지원제도(Success repayable loan system)를 1984년부터 도입하게 되었다.

- 성공불용자제도는 응자대상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응자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고, 성공할 경우에는 응자원리금의 상환외에 일정비율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응자제도이다.

〈국별 석유개발사업지원 사례〉

프랑스 : 소요자금의 50%까지 성공불용자

독일 : 소요자금의 50%까지 성공불용자

일본 : 소요자금의 70%까지 출자 및 성공불용자

2. 지원현황 및 계획

(1) 지원 및 감면현황

- 석유사업기금의 융자지원은 1984년부터 실시하였으며, 1992년 말까지 융자지원 실적은
 - 국내대륙붕(한·일공동구역 포함) 탐사사업에 7백62억원, 해외석유개발사업에 1천3백88억원 등 총 2천1백50억원이다.
 - 지원형태를 구분하면, 국내대륙붕 탐사비 7백62억원을 전액 성공불용자로 지원하였으며, 해외석유개발사업은 이집트 자파라나 석유개발사업등 25개 탐사사업에 성공불용자로 1천2백30억원을, 아르헨티나 팔마라르고 기개발유전 매입등 4개 사업에 일반용자로 1백57억원을 지원하였다.
- 탐사사업중 경제성 있는 석유확보에 실패하여 사업이 종료된 인도네시아 아당 석유개발사업등 4개 사업에 성공불용자로 지원한 2백4억원은 감면조치하였다.
- 1993 지원계획
 - 국내대륙붕 6-1 광구탐사(시추 1공)등에 105억원을, 베트남 11-2 광구 석유개발사업등 해외석유개발사업에 4백12억원을 총 5백17억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 또한 1993년부터는 석유광구 참여를 위한 사전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줌으로서 적극적인 사전조사를 유도, 유망석유광구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석유사업기금에서 22억원을 확보 보조지원할 계획이다.

3. 지원제도

(1) 탐사사업

탐사사업은 성공불용자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성공시에는 융자원리금 상환 외에 일정비율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고 사업실패시에는 융자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고 있다.

• 융자비율

운영권 확보 및 콘소시엄으로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참여 형태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

- 운영권자로 참여하는 사업

- 콘소시엄 : 탐사사업비의 70% 이내

- 단독 : 탐사사업비의 60% 이내

- 비운영권자로 참여하는 사업

- 콘소시엄 : 탐사사업비의 60% 이내

- 단독 : 탐사사업비의 50% 이내

- 융자기간 및 이자율 : 18년(거치기간 포함), 연리 6%

• 융자원리금 상환

석유개발에 따른 단위사업 수익금(6개월)에서 운영비 및 개발비를 우선 회수하고 잔액을 탐사사업비에 대하여 기금지원 비율만큼을 융자원리금으로 상환한다.

• 특별부담금 징수

개발비 및 탐사비(융자원리금 포함) 전액을 회수한 후 순이익금에서 운영비를 차감한 잔액을 탐사사업비에 대하여 기금지원 비율만큼을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징수는 상업적 생산개시일부터 15년간의 생산물량에 대하여 징수한다.

(2) 유전매입사업

상업적 생산을 하기 위한 개발단계에 있거나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유전의 지분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매입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석유사업기금에서 일반용자로 지원하고 있다.

- 융자비율 : 유전매입자금의 40% 이내

- 융자기간 및 이자율 :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연리 6%

- 융자원리금 상환 : 5년 균등분할 상환

(3) 기타

• 융자대상지분

석유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대상 지분을 규정하고 융자대상 지분범위이외의 지분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 탐사사업 : 참여지분 10~75%가 융자대상임.

- 유전매입 : 참여지분 40%까지가 융자대상임.

• 융자대상광구

수개의 광구로 이루어진 사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 혼가를 하나의 사업으로 받은 경우에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 광구별로 독립회계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사업을 광구별로 한다.

(4)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탐사사업(성공불용자)	유전매입사업(일반융자)
융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업 운영권자 - 콘소시엄 : 탐사비의 70%이내 - 단독 : 탐사비의 60%이내 비운영권자 - 콘소시엄 : 탐사비의 60%이내 - 단독 : 탐사비의 50%이내 	해외사업 : 유전매입 자금의 40% 이내
융자기간 및 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거치기간 포함) ◦ 년 6% ◦ 상업적 생산이 개시될 경우 거치기간 이자를 원금에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5년 거치기간 포함) ◦ 년 6%
융자원리금 상환 및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 생산에 이른 이후 사업수익금에서 생산운영비, 개발비, 공제이후, 잔액이 있을 경우 동 잔액을 탐사비에 대하여 기금지원 비율만큼을 원리금으로 상환 ◦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거나 이를 경우에도,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할 경우 미상환 잔액을 감면 	◦ 5년 균등분할 상환
특별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비, 탐사비 회수 완료이후 순이익 단계에서 15년간 생산물량에 대한 일정율의 특별부담금 정수 	
융자대상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지분 1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지분 40% 이내

4. 향후 지원방향

- 우리나라의 해외석유개발사업은 초기의 탐사사업 참여위주에서 지금은 기개발 유전매입 단계에 까지 확대 발전하여 왔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도 다양하게 변천하여 왔다.
- 현재, 탐사단계와 유전매입에 관한 금융지원제도는 확립되어 있으나, 개발단계(생산시설 건설) 금융지원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 스스로 소요자금을 국제금융을 통하여 조달해야 하는 실정에 대비하여 석유사업기금에 의한 채무보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이다.

- 또한 철저한 조사사업을 통하여 유망광구를 확득, 사업의 성공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구 취득이전 단계의 조사사업에 석유사업기금으로 일정율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제도를 마련, 시행을 준비중에 있다.
- 2000년대초 석유자주 공급율 10% 달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지원정책을 강구 시행해 나갈 것이다. ♡

에너지절약은 우리손으로부터